

- 2019년 대전문화재단 -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공개

□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 기관운영 종합감사’ 를 실시하고, 같은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 감사기간 : 2019. 7. 4. ~ 7. 12.(7일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건/명)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회수	추징	지급	계	훈계	경고	기관 경고
21	2	17	2	1/60	1/60	-	-	10/16	5/6	4/9	1/1

○ 공개목록 : 본 처분 10건(현지처분은 제외)

* 본 공개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규정에 의거 상호, 성명, 단체명 등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비공개 하였습니다.

목 차

1. 무단 관외출장 실시	3
2. 문화예술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실시	5
3. 단시간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7
4. 기금 운영·관리 부적정	9
5. ○○○○○○ 활동비 지급 부적정	12
6. 보관금(수입·지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15
7.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부적정	17
8.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19
9.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21
10.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24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무단 관외출장 실시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회 수(60,000원)

[신분상 조치] 훈 계(1명), 경 고(2명)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직원복무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출장을 실시하고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문화재단 직원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상황은 전자문서시스템의 근무상황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직원 4명이 20××. 4. 17. ○○○○의 모친상을 조문하기 위하여 직원 대표로 서울 소재 ○○○○장례식장으로 출장을 가면서 1명은

복무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전결권자인 문화예술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외 출장을 실시하였으나, ○○○○팀장 ○○○ 등 3명은 관외출장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장을 실시한 후 각 20천 원씩 합 60천 원의 출장여비를 지급 받았다. ([표] 참조)

[표] 무단 출장 및 여비 지급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출장자			출장일	출장사유	행 선 지	출장비
	소속	직급	성명				
		계	3명				60
1	○○○○팀	○급	○○○	20××. 4. 17.	○○○○ 모친상 조문	○○○○○ ○ 장례식장	20
2	○○○○팀	○급	○○○				20
3	○○○○팀	○급	○○○				20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무단으로 출장을 실시한 관련자 3명으로부터 출장여비 60,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허가 없이 출장을 실시하면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 철저를 기하며 (시정)

○ 관련자 ○○○○○○팀 ○급 ○○○는 “**훈계**”, ○○○○팀장 ○급 ○○○, ○○○○팀장 ○급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문화예술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실시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통 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해 [표]와 같이 매년 각종 문화예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문화예술보조사업 현황

(단위: 천 원, 개)

구분	사업건수	사업비	지원 단체 수
2016	예술창작 지원 사업 등 22건	4,885,000	436
2017	레지던시 지원 사업 등 27건	5,685,220	618
2018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 28건	5,558,400	643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예술보조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성과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재단 대표이사는 정산검토 및 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운

영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재단 대표이사가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예술보조사업 보조금 관리 내규」 제14조의2에 따르면 전문가 및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를 하거나, 평가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점수 60점 미만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시행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만을 점검·확인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실질적인 운영성과에 관하여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익년도에 연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아무런 평가도 없이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 93개 단체에 2년 연속하여, 38개 단체에는 3년 연속하여 지원하는 등 [별표] “연속 지원사업 현황”과 같이 총 19개 사업, 328개 단체에 성과평가 없이 2년 연속 또는 3년 연속하여 지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문화예술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실시에 대하여 경고하오니,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평가·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경고)
- 앞으로 문화예술보조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주의)
-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 마련 및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단시간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경 고(5명)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2017년 행사진행요원 177명을 사업보조인력으로 채용하여 전시장관리 활동에 근무토록 하는 등 매년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표 1] 단시간근로자 채용 현황(2019. 5. 31. 기준)

(단위: 명, 천 원)

연도별	사업명	채용 인원	보조인력 세부활동				예산 집행액
			계 (연간 근로일수)	전시장관리	행사지원	무대운영지원	
2017년	행사진행요원	177	566	208	284	74	36,974
2018년	"	217	563	100	395	68	41,708
2019년	"	52	145	67	68	10	10,810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여 1일 4~8시간, 1~19일간 행사보조, 전시장관리 등의 활동에 근무토록 하면서 해당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2017년도 177명 중 149명, 2018년도 217명 중 156명, 2019년도 52명 중 45명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표 2] 참조)

[표 2] 단시간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황(2019. 5. 31. 기준)

(단위: 명)

연도별	채용인원	연간근로일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내역		비고 (근로내용)
			가입자수	미가입자수	
2017년	177	566	28	149	전시관관리, 행사지원 등
2018년	217	563	61	156	"
2019년	52	66	7	45	"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의)

○ 관련자 ○○○○팀장 ○급 ○○○, ○○○○팀장 ○급 ○○○, ○○○○팀장 ○급 ○○○, ○○○○팀장 ○급 ○○○, ○○○○팀장 ○급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기금 운영·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 계(2명), 경 고(1명)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고 [표]와 같이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대전문화재단 기금 현황

(단위: 원)

구분	최초개설일	최종예치일	금액	예치기간	비고
적립기금	2009. 10. 28.	2019. 1. 8.	13,365,993,628	12개월	정기예금 (연1.64%)
운영기금	2019. 6. 7.	2019. 6. 7.	246,158,674	-	보통예금
계			13,612,152,302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

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립기금은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운영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운영하되,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하고, 연1회 이상 원금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기금으로 적립된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연 1회 이상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2019. 7. 12.) 현재까지 기금운영계획만 수립한 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없이 기금을 관리하여 왔으며, 2009. 10. 28. 최초 기금조성 이후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적립기금만으로 운영하다가 2019. 6. 7. 에서야 운영기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금운영계획의 변경 및 이사회 의결 없이 [표]와 같이 246,158,674원을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기금조성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9. 3. 29.에서야 처음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적립기금 및 운영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 이사의 의결 및 시장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 관련자 ○○○○팀 ○급 ○○○, ○급 ○○○은 “**훈계**”, ○○○○팀장 ○급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 활동비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통 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을 선임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전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제5조 따르면 ○○○○은 직급없는 비상근직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에게 보수(활동비)를 지급할때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기관의 「보수규정」 제7조와 제25조에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고,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은 내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비상근직원인 ○○○○○○의 보수에 관해서는 규정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의 업무추진비로 매년 2,040천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근거규정이 없는 활동비를 수당으로 편성하여 2016. 11. 1. 부터 2017. 3. 31.까지 월 1,500천 원을, 2017. 4. 1.부터 감사일 현재(2019. 7. 12.)까지는 월 2,000천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표] 참조)

[표] 대전문화관장 활동비 지급 내역(2019. 5. 31. 기준)

(단위: 천 원)

지급기간	성명	월 활동비	연간지급액
계	○명	-	59,435,470
2016. 11. 1.~12. 31.	○○○	1,500,000	3,000,000
2017. 1. 1.~10. 14.	○○○	1,500,000(1~3월) 2,000,000(4~10월)	22,435,470
	○○○	2,000,000	
2017.10. 15.~12. 31.	○○○	2,000,000	24,000,000
2018. 1. 1.~12. 31.	○○○	2,000,000	10,000,000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근거규정 없이 ○○○○○○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 ○○○○○○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보관금(수입·지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수입·지출 외 현금 즉,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관하다가 후에 반환하는 현금 처리를 위해 [표]와 같이 보관금 계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대전문화재단 보관금 관리 현황(2019. 7. 10. 기준)

(단위 : 원)

계좌명	최초개설일	현재금액	보관금 내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보관금	2009. 11. 10.	357,423,488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금액 -직원 소득세 원천징수금액 -4대보험료 부담분 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7조에 따르면 현금출납부, 수입부, 지출부 등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회계장부를 관리,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관금은 현금출납부 등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보관금 계좌를 2009. 11. 10. 최초 개설하고 2019. 7. 12. 현재 보관금 계좌에 357,423,488원의 현금을 보관하면서 현금출납부 등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아 보관금 계좌에 수납된 금액의 용도 및 처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대전광역시 20××년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주의처분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2019. 7. 10. 기준 7,319,567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매년 이자수입으로 예산편성 하여야 하는데도 보관금 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현금출납부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금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년 이자수입으로 예산편성 하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 계(1명)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20×× 대전문화재단 ○○○○○○○○용역” (기초금액: 87,500천 원, 사업기간: 20××. 4. 1.~20××. 11. 30.)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2018. 3. 8. 경쟁입찰, 2018. 4. 10.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자 20××. 4. 30.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0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입찰 결과

유찰되어 수의계약 할 경우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 기관에서 실시한 최초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용역 회사 소유의 직영차량 20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의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최초 입찰과 동일한 조건인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용역회사 소유의 직영차량 2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기관에서는 2018. 3. 8. 최초 입찰에서 입찰 계약대상자의 적격심사 결과 차량 보유 기준(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20대 이상)을 만족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2018. 4. 10.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또 다시 유찰되었다.

이후 위 기관에서는 20××. 4. 26. ○○○○(주)와 (주)○○○○ 2개 업체에 차량운송용역 참여의향서 및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최초 입찰과 동일한 조건이 아닌 ‘용역회사 소유의 직영차량 20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최초 입찰을 부칠 때에 정한 조건(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용역회사 소유의 직영차량 20대 이상 보유)을 갖추지 못한 ○○○○(주)와 20××. 4. 30.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최초 입찰 때의 조건 등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주의)

○ 관련자 ○급 ○○○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 계(1명), 경 고(1명)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 ○○○○ ○○○○ 조성을 위해 20××. 3. 8. ○○○○○(대표자 ○○○)와 “20×× ○○○○○ ○○○○ ○○ ○○ ○○ 조성공사”(계약금액 19,050천 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0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

결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및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에정금액이 15,000천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에정금액이 15,000천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 계약은 당해 공사에 맞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 시행한 “20×× ○○○○○ ○○○○ ○○ ○○○○ 조성 공사”의 경우 관련 전문건설업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도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인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전문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의)

○ 관련자 ○급 ○○○은 “훈계”, ○○○ ○○○팀장 ○급 ○○○은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 계(1명)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대전 테미예술 창작센터의 내·외부 보안관리 및 경비 용역을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0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

(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기준 제1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체결 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Ⅱ장(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 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발주 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년도 대전 테미예술 창작센터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운영관리용역과 시설경비용역을 통합 발주하였을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았어야 했는데도 [표]와 같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와 시설경비로 구분하여 각각 1,800천 원, 21,000천 원으로 같은 날짜(20××. 12. 27.)에 같은 계약자(○○○○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대전 ○○○○ ○○○○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 및 시설경비 용역 계약

(단위: 천 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계		22,800	
20×× 대전 테미예술 창작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	20××. 12. 27.	1,800천 원	○○○○(주)
20×× 대전 테미예술 창작센터 시설경비	20××. 12. 27.	21,000천 원	○○○○(주)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경비용역을 발주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용역과 시설경비 용역으로 나누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의)
- 관련자 ○급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지 적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대전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0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전문화재단의 「재무회계규정」 제4조에 따르면 재단의 회계관계직원 중 재무관은 문화예술본부장, 지출원은 행정지원팀장으로 지정하고, 재무관은 지

출 원인 행위, 지출원은 지출 명령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업무분장 내규」 제3조에 따르면 회계·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본부 행정지원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공사·용역·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문화예술본부 행정지원팀에서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관부서인 문화예술본부 ○○○팀에 의뢰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서 총 401건, 5,416,157천 원에 대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참고)

[표] 사업부서에서 체결한 계약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401	5,416,157	36	466,816	278	4,632,344	87	316,997
2016	58	723,033	1	1,155	35	647,720	22	74,158
2017	148	1,764,913	16	188,240	120	1,516,247	12	60,426
2018	110	1,823,177	10	219,801	78	1,515,470	22	87,906
2019	85	1,105,034	9	57,620	45	952,907	31	94,507

[조치할 사항]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재무회계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